###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22 제출연월일 : 2024. 9. 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 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 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 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 1) 내국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금액보다 높이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가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기간제근로자 등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

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임금증가분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의 비 율을 곱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 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 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 의3제1항)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안 제91조의18 제2항 및 제3항)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계좌보유자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2천만원)으로, 그 밖의 계좌보유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안 제100 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 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 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안 제106 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 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 접 납부하도록 함.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51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 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 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 의 50
-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 업의 경우: 100분의 50
-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

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제6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6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가)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2)나)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6조의7"을 "제46조의7, 제100조의33"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 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

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 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이 조"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 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증가한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고용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 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400만원
  - 2) 수도권에서 증가한 경우: 2.200만원
- 나. 중견기업의 경우: 1,2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400만원
- 2.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고용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500만원
    - 2) 수도권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나.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0원
-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중견기업의 경우
    - 1)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보다 같거나 큰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700만원

2)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보다 작은 경우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최소고용증가 인원수 -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2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400만원

제29조의8제2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제8항을 각각 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10항·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29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 공제연도"라 한다)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공제연 도의 공제금액
- 2.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900만원)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감소 인원수 × 5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0원

제29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인원 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육아휴직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 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9조의8제5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상시근로자 수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 중인 계속고용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탄력고용근로자" 라 한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총액 증가율	공제액
100분의 20 이하	(임금증가분 - 최소임금증가분) × 20/100
100분의 20 초과	[{(직전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최소임금증가분} × 20/100] + [{임금증가 분 - (직전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40/100]
• 최소임금증가분: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최소임금증가분: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증가분

### 2.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총액 증가율	공제액
100분의 20 이하	(임금증가분 - 최소임금증가분) × 10/100
100분의 20 초과	[{(직전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최소임금증가분} × 10/100] + [{임금증가분 - (직전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20/100]

· 최소임금증가분: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증가분

제29조의8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수, 전체 계속고용근로자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탄력고용근로자 임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 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 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

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등 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

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 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3항·제4항"을 "제29조의8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국립암센터법」"을"「암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 1) 제1호가목의 법인
  - 2) 제2호의 법인

-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 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의2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

항을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제3항제3호나목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제3호에 따른 운용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한다"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운용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 1) 예금 · 적금 · 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1조의18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

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를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투자대상자 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 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

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를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총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 1.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 2.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 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전부 또는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 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 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 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

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 급자일 것
-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 만원) × 2천700분의 330

제100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frac{A}{B}$$
 × C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 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2항제10절의5에 제100조의33 및 제100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비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 액보다 증가하였을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 1. 주주화워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금액의 평균금액 × 1.05)

- 2. 주주환원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 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0조의3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 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 큰 금액
    - 1)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 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 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다.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 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 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 과세특례 배당소득 금액(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세액
- 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100 분의 9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 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 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

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 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 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매년 최초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의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렁으로 정하는 주주환원 금액 명세서와 과세특례 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 확대기업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1항 전단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을 "금액)은 2백만원"으로, "750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둘 이상의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한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면세점

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 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 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 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 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 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 산한다.
-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 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 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 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확급하여야 한다.
-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 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 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 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며, 라그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 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4"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4호·제5호, 같은 항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의8제9항은 제29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 33"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 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 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

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9조의8제9항 및 제127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8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 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 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 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제12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다.
- 제1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 제14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 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

보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는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의 이법 시행 이후 연간 납입한도는 제91조의18제3항제5호 계산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천만원 × (1 + A) + 2천만원 × B - 누적 납입금액

A: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

B: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④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16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7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9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0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21조(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을 배당하거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2조(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3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2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요

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5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7조(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8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 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29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제30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1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2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 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 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 한 경우
  -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

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 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제3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8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세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액은 제104조의8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7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 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
	<u>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
	<u>한다.</u>
11. "연구개발"이란 <u>과학적 또</u>	11 <u>과학적 · 기</u>
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	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
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u>위한</u>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액감면) ①
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 중 <u>2024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	
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 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 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 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1
<u>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u>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

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 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u>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u> 업한 경우
  -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 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 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 2.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 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_	1	1
(	)	l	į

-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2.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u>
12월 31일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 ~ 7. (생략)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 다. <u>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u> 산 매매 및 중개업
- 9. ~ 18. (생 략)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1.•2. (현행과 같음)
3
<b>3</b>
1. ~ 7. (현행과 같음)
8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가상자산</u>
9. ~ 18. (현행과 같음)
4)
<b>(4)</b>
<u>2027년</u>
12월 31일

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 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⑤ (생략)
-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⑤ (현행과 같음)
<b>6</b>
2027년 12월 31일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 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 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 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 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 우는 제외한다.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 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50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
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u>창업한 경우: 100분의 50</u>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 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 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 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 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 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 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 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

71. 12 19 71 12 1
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u>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u>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
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
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u>창업한 경우: 100분의 50</u>
⑦
<u>창업중소기업</u>

가 수도권 인이 지연 또는 수

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 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 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0 직전 과세연도의 × 100 상시근로자 수

8 ~ ① (생 략) <신 설>

제1항 및
제6항에
1. (현행과 같음)
2
<u>제1항,</u>
<u>제5항 및 제6항</u>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⑧ ~ ⑫ (현행과 같음)
- ③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가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하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 하. (생 략)

거. 정보서비스업(<u>블록체인</u><u>기반 암호화자산</u> 매매 및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 부. (생 략)

2. · 3. (생략)

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
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
지 아니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u>.</u>
1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가상자산
너. ~ 부.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 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 만을 적용한다.
  -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7년 12월 31
 일
<del></del>
<u>.</u>
1

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 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 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 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

가
1) (현행과 같음)
<u>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u>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100분의 25)
나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 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 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 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 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 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 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u>100분</u>
۵) ۱۵
<u> </u>
<u>.</u>
2
۷.
가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 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 구 ·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100분의 35)

나. (연행과 같음)
3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생 략)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
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u>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u>
<u>경우에는 100분의 50]</u>
나
1.
1) (현행과 같음)
– . , – , .
2)
가)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 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 4) (생략)

### ② ~ ⑥ (생 략)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저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 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 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 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 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 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100분
의 20
나)
<u>100분의 15</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u>국가, 지방자치</u>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
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u> 방공기업으로부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저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 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 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 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인수법인이 <u>최초취득일이 속</u> 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 <u>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u> <u>의 다음</u>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

세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에 대한 세액공제) ①
<u>2027년 12월 31일</u>
<u>100분의 5</u>
 1. (현행과 같음)
이 최근치드이버디 이
2 최초취득일부터 2
<u>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u>

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 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 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 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 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 할 것

##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 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 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 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

3. ~ 5. (현행과 같음)
②
2
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 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 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 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 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 1. 2. (생략)
-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u>창투조합등</u>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메쉬 티키 코치 디
<u>벤처투자조합등</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인	o }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u>[</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약	) }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약	)]
	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۲]
	아니한다.	

- 1. 2. (생략)
-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식 또는 출자지분가. ~ 마. (생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u>벤처투자조합등</u>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 법인등"이라 한다)이 <u>창투조</u> 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 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 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생 략)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u>벤처투</u>
	자조합등
5.	
	<u>제46조의7,</u>
	괴100고이??
	제100조의33
	제100조의33
	제100조의33
6.	제100조의33
	제100조의33
	제100조의33
6.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 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신기술사 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 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 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 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1. ~ 5. (생략)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벤처투자조합
<u>등</u>
1. ~ 5. (현행과 같음)
③
벤처투자조합등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 4. (생략)
- ④·⑤ (생 략)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

<u>.</u>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1. (현행과 같음)
2
۵.
<b></b>

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 다) 또는 <u>창투조합등(민간재</u> 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 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 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 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 분

## ② ~ ⑥ (생 략)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 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

벤처투자조합등
② ~ ⑥ (현행과 같음)
∥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 (현행과 같음)
2

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투자대 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 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 이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투자 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 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 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을</u>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 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1. ~ 4. (생 략)
- ③ ④ (생 략)

벤처투자조합등
3
J.
벤처투자조합등
②
벤처투자조합
<u>c</u>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저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 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 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 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 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1. ~ 6. (생략)
-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 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급은 세10034오 소세득네세인급
일부개정법률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u>「소득세법」 제94조제</u>
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1. ~ 6. (현행과 같음)
7
<u>「소</u>
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 <u>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u>----다) ---

- 8. (생략)
- ② · ③ 삭 제
- ④ (생 략)
-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 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 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 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 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 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 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 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 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
   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
   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

<u> </u>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소득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
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6)
<u>「</u> 소득세법」 제16
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한다.

# ⑦・⑧ (생 략)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 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 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 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 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 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 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 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자소
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u>2027</u>
<u>2027</u> <u>년 12월 31일</u>

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③ (생 략)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 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 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 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 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 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u>2027년 12월</u>
31일
<u>.</u>

- 1. ~ 3. (생략)
- ②・③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 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 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 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 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 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 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 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1. ~	- 3.	(현행과	같음)
------	------	------	-----

2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1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u>2027</u>
년 12월 31일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 1. • 2. (생략)

-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

1. • 2. (현행과 같음)
②
<u>양도하여 발생</u>
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u>소득세</u>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 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 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 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 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④ ~ ⑥ (생 략)
  - ⑦ 제2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u>세</u>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⑧ ~ ⑩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 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 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 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 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4	$\sim$	(6)	(현행과	같음)

⑦ ----- <u>양도소득세</u>--------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_\_\_\_\_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 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 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 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 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 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 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 세법 시21조에도 불구하고 해 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 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u>세</u>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

양도소득세
0 -11
②
<u>「소득세법」 제94조</u>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
③ <u>양도소득세</u>
「ㅅㄷ귋ㅐ -1107
「소득세법」 제97

조의1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
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
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
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u>이 경우</u>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생략)
- ⑤ 제2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u>세</u>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⑥ (생 략)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정의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

<u>조</u>
④ (현행과 같음)
⑤ <u>양도소득세</u>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 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 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u>2027년</u>	12월 3	31일	
		<u> 100</u> 년	<u> </u>	
2				
	<u>2</u>	2027년	12월 31	_
일				
1. · 2. (	현행과 점	같음)		
3 • 4 (	현행과 🌣	같음)		
ll 24조(통	합투자세	액공제	]) ①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 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 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

     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u>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u> <u>투자하는 경우</u>
  - <u>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u> 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u>가)</u> 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u>다) 가) 및 나) 외의 경</u> <u>우: 100분의 15</u>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 자 하는 경우
  - <u>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u> 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

3. (생략)

② ~ ⑤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의 경우: 1000분의
75
<u>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u>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1
나
٩.
<u>100분</u>
<u>100분</u> 의 <u>10</u>
<u>의 10</u>
<u>의 10</u>
<u>의 10</u>
의 10
의 10
의 10 
의 10
의 10 

집

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 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 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 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 4를 적용한다.

④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시41조제2항에 따른 투 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 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 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 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 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

<u>(</u>	<u>3</u> (연행 세4앙과 같음)
법퇕	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투	<b>르</b> 개정법률
제2	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ス	· 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_	
_	
_	
_	
_	
_	
_	
_	
_	
_	
_	
_	-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7-	
	<u> </u>
<u></u>	<u> </u>

용한다.

- 1. ~ 3.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 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 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법 | 제87조의4를 적용한 다.

③ (생략)

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 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 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이 조-----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 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 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 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 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 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 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
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공제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업에 2027년 12월 31일
<u> 게 함께 2021년 12년 51년</u>
<u>기업에 2027년 12월 31월</u> 
<u> </u>
<u>/  日刊 2027 년 12 년 51 년</u> 
<u>ハー日 和 2027 ゼ 12 包 31 包</u> 
<u>기업에 2027년 12월 31월</u> 

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 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 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 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 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 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2. (생 략)

②·③ (생 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 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 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8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속 고용 근로 자(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근 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계속고용근로자의 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와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 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 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한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한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한다)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속고용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계속고용근로 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 (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400만원

-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 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 가한 경우: 950만원
- 2) 수도권에서 증가한 경우: 2,200만원 나. 중견기업의 경우: 1,2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400만원
- 2.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고용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이하 이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 <u>가. 중소기업의 경우</u>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증가한 경우: 1,500만원
    - 2) 수도권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u>나.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u> <u>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u> 0원
-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 1)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

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 소고용증가인원수보다 같거나 큰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700만원

2)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
 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
 소고용증가인원수보다
 작은 경우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 수 - 청년등외계속고용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2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400만원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 다.
-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 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 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 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 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 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 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 에서 "최초 공제연도"라 한다)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 체 계속고용근로자의 수가 감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수 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최 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2. 청년등계속고용근로자의 수

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 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신 설>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

>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 계속고용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900 만원)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 계속고용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500 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 제받은 내국인이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전체 계속고용근로자 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의 계속 고용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연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도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근 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인원 수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 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 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 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 다.

<u>④</u>·<u>⑤</u> (생 략)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 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 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 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 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신 설>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u>⑥</u> ⋅ <u>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⑧</u> 제5항 또는 제6항
<u>제5항 또는 제6</u>
<u> </u>
<u>항</u>
<u>ᢐ</u>
<u>ŏ</u> }
<u>ŏ</u> }
<u>ŏ</u> }

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 로자(이하 이 조에서 "탄력고용 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임 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 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 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만,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 한다.

# 1.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	
도 대비 임금	공제액
총액 증가율	
100분의 20	(임금증가분 - 최소임
이하	금증가분) × 20/100
	[{(직전과세연도 임금총
100분의 20	액 × 20/100) - 최소임
초과	금증가분} × 20/100] +
	[{임금증가분 - (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40/100]

·최소임금증가분: 전체 중소기업 임 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증가분

### 2.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	
도 대비 임금	공제액
총액 증가율	
100분의 20	(임금증가분 - 최소임
이하	금증가분) × 10/100
	[{(직전과세연도 임금총
	액 × 20/100) - 최소임
100분의 20	금증가분} × 10/100] +
초과	[{임금증가분 - (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 ×
	20/100)} × 20/100]

·최소임금증가분: 전체 중소기업 임 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증가분

①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u>⑩</u>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 항-----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계속고용 근로자 수, 전체 계속고용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 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 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 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 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탄력고용 근로자 임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세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u>청년, 60세 이</u>
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
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
<u>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u>

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 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 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 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 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 분할 •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 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u>경력단절 여성은</u> 제 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경력단절 근로자는</u> -

#### ⑨ (생 략)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 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 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 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 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 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_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 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 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 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
여세 과세특례) ①
<u>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
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
조의7에서 같다]

⑨ (현행과 같음)

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 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 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3. (생략)
- ② ~ ⑧ (생 략)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저 납부유예) ① ~ ⑦ (생 략)
  - 8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⑨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현행과 같
<u>수</u> )
8
<u>제30조의5제8항부</u>
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
<u> উ</u>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세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 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 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 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 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 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다. <단서 신설>

----- <u>양도소</u>득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 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다. 1. ~ 3. (현행과 같음)

- 1. ~ 3. (생략)
-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

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 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 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 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 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단서 신설>
-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 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 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

<u>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삭 제></u>

④ <u>제1항 및 제2항</u>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 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 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 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u>양도소득세</u>
<u>양도소득세</u>
<u>양도소득세</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u>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 1. · 2. (생략)
-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 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 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 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 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 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 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 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 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

제1항 각 호
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양도소득세

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 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 1. ~ 3. (생략)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 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 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 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 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 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 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 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 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

1. ~ 3. (현행과 같음)
③

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 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 ----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 하는 경우 <단서 신설>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 | 4. ------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경우. <단서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 <삭 제> 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제3항제3호 · 제4호 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 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⑥ ----- 제4항-----

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 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 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 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 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 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u>.</u>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u>양도소득세</u> -

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 · 2. (생략)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 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 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 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 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 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
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
할납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u>р с 1/</u>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 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 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금융</u> <u>투자소득세</u> 또는 법인세의 과세 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1. (생략)
- 2. 거주자: 금융투자소득세를 양 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 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 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

<u>양도소</u>
<u> 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③ 양도
소득세
1. (현행과 같음)
2 <u>양도소득세</u>
양도소득세

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한다.

-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 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 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 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 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

<b>.</b>
4
<u>양도소득세</u>
<u>양</u>
도소득세
5
양도

투자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 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 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 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 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 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 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 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 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 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 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 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u>소늑세</u>
<u>%</u>
도소득세
<b>.</b>
1. ~ 4. (현행과 같음)
6
<u>양도소득세</u>

-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 한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계산, 자회사의 사업의계속 및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 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삭 제>
⑧ <u>제6항</u>
 나르 게10C94호 코게트레게취붜
념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 부개정법률 
11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양도소득세</u>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생략)
- ④ ~ 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u>양도소득세</u>
1
<u>양도소득세</u>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세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 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 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 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 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 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u>금융</u> 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 속 · 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

о̀ нт.
<u>양도</u> 소득세
<u> </u>
<u>.</u>
· 1.·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e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 1. · 2. (생략)

## ④ ~ ⑥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

<u>양도소</u>
<u> 득세</u>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세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 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 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 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 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 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 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양도소득세</u>
<u>양도소득세</u>
<u>.</u>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 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 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 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 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 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 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③ <u>양도소득세</u>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
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 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 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 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 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 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 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 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

<u>2027년 12월</u>
31일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양도소득세</u>

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u>금융투자소득세</u>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

<u>양도소득세</u>
③ 양도소득세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 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 함한다)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 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 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 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양도소득세</u>
③ <u>양도소득세</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u>양도소득세</u>
<u>양도소득세</u>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u>창업주"라 한다)가</u>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 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 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 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 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생략)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 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청하여야 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10만원 초과 <u>5백만원</u>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 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③ (생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 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 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 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 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 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 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2	2. –		 	2	천민	-원			
		- — -	 						
,		·	 -n -						_
		3		•			71.	Ò	رم
		·(수							
		는	입· 					召	뛴
	ਰ)	1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한다. <u>다만</u>, 대통령령으로 정 ----. <u><단서 삭제></u> 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 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한 기업일 <u>것</u> <단서 신설>

-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u>수도</u> 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1.		
	가	
		<u>것.</u>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
		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
		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
		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한다.
	나	<u>수도</u>
		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박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
		<u>소지역)으로</u>
	다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 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 사"라 한다)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생략)

-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u>수도권(중소기업</u>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2) (현행과 같음)
2) (연%과 싙금)
2. (현행과 같음)
2. (20 ) 20/
2
4 (5) 50 3 -1 6)
1. (현행과 같음)
2
۷.
<u>수</u> 도권 밖(중소
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
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u> </u>
3 수도권 중

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 ③ ~ ⑥ (생 략)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 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u>영</u> 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⑧・⑨ (생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 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도권
<u>의 인구감소지역</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코</u>
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
위하던
⑧・⑨ (현행과 같음)
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u>것</u> <단서 신 설>

나.·다. (생략) 2.·3. (생략)

 1
1
가
<u>것.</u> <u>다만, 본사</u>
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
<u>외한다.</u>
나.・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⑥·⑦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 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 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 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 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본사의 이</u>
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u>상 영위하던</u>
⑥·⑦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ļ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 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 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 마. (생 략)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

 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

 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아. (생 략) 2.·3.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1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
미터 이내의 것
<u>1) 「수산업법」 제2조제7</u>
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
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
조제8호의 양식업권
사.・아.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

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

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 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 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 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 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 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 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 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 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

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
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

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

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

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 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 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u>제29조의8제3항·제</u>4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삭 제
- ④ ~ ⑥ (생 략)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u>제29</u> 조의8제5항·제
<u> 6항</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①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가. ~ 다. (생 략)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 사. (생 략)

<u><신 설></u>

4. ~ 9. (생략)

②·③ 삭 제

④ (생략)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

- 1.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암관리법」-----

마. ~ 사. (현행과 같음)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 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 단
  - 1) 제1호가목의 법인
  - 2) 제2호의 법인
  -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 인
- 4. ~ 9.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 ⑤ (생 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 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 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u>7천만</u>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 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
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
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u>8천만</u>
원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u>500</u>만원
-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 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 하인 경우: 300만원
- 3. (생략)
- ② ~ ⑧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 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 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u>.</u>
1
<u>600</u>
<u>만원</u>
2
<u>400만원</u>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
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
<u>O</u> )
②

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 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 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 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 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
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
이라 한다)
③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가. · 나. (생략)
- 2. (생략)
-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 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 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 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 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 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

<b>.</b>
1
1.
<u>세</u>
대주등으로서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b>4</b> )
4)
ᆒᆌᅎᄃᆒ
<u>세대주등에</u>
해당하는지 여부를
·
1. • 2. (현행과 같음)
⑤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 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 세법 \_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 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 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 ⑥ ~ ⑨ (생 략)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 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생략)
-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 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u>세대주</u>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
<u>.</u>
⑥ ~ ⑨ (현행과 같음)
①
·.
1. (현행과 같음)
2
세대주

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
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 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 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

<u> 등</u>
<u>.</u>
<u>&lt;삭 제&gt;</u>
①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u>에 대한 과세특례)</u> ①

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u>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u>(투자 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u>「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u>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 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 1항을 적용받는 <u>배당소득 및 금</u> 용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 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u> 배당소득</u>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
<u>.</u>
· ④ (현행과 같음)
<u>&lt;</u> 식 제>
<u> </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87조의4를 적용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u>배당</u> 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계산방 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

<u>5</u>
 <u>배당</u>
<u>소득</u>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서 발생하는 <u>이자소득</u>, 배당소 <u>득 및 금융투자소득</u>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7.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③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

		이자	소득	및	배당
<u>소득</u>					
1. ~ 7.	(현행	행과 같	날음)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① (현행 과 같음)

14)	 	 		
	 	 	「소	득세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1. ~ 3.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 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 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 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 제129조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 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 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u>양도소득</u>
<u>양도소득</u>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0月工寸引州五正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 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87조의4를 적용한다.

- ③ ~ ⑥ 삭 제
- ⑦·⑧ (생 략)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 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 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 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 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 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 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

⑦·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
승)
6

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 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제4 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 구하는 경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 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 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 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 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8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 신탁 • 투자합자조합 • 투자익명 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 닌 경우에는 <u>집합투자재산에 귀</u> 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 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 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 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 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 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 래세법 | 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 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4. (생 략)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 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 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 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

③
<u>이자소득 및 배당소득</u> -
· 1.·2. (현행과 같음)
< <u>식 제&gt;</u>
<u>\                                    </u>

다.

- ⑤ 삭 제
- ⑥ ~ 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 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 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 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

⑥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 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 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 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 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 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 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 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 를 적용한다.
- ③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
<u>호</u>
<u>배당</u>
소득금액
1. • 2. (현행과 같음)
<산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 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 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 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 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소득과세표준-----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 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u>400만원</u>

가. ~ 다. (생 략)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u>할 것</u>
  -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상품

1. ------ <u>1천만원[제3항제3</u> 호나목의 국내투자형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이하 "국내투 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 ----- <u>500만원(국내투자형</u>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u> 에는 1천만원)
- 마취머 게2호세 메큐 0
- ----- 말하며, 제3호에 따른 운용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구분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운용할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

- 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 합사채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 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포함한다)
-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 합증권
-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의 주식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

-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 는 비율을 초과하여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 다.
  - 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 1) 예금 · 적금 · 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상품
    - 2)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3)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
    - 4)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5) 「소득세법」 제88조제3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 4. (생략)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 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1)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 증권
-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4. (현행과 같음)

5	<u>2억원</u>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 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④ (생략)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 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 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 ①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u>「소</u> 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 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오 한덕기 구구 됩됩니다
④ (현행과 같음)
5
<u>투자대상자</u>
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
<u> 감하여 계산한다</u> .
<u>&lt;삭 제&gt;</u>
<u>⑥</u>
<u>「</u> <u>「</u> <u></u>
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 1.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 된 세액
-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 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

①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u>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u> 아니한다.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 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 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u>제1항</u> 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 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 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u>제10항</u>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 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 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 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

<u>8</u>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u> </u>
제1항
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
<u>다)</u>
⑩ 제9항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① (생략)

<신 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 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_	 _	_	-	-	-	-	-	-	-	-	-	-	-	-	-	-	-	-	-	-	-	-	_

-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
-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총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 1.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 2.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 해당 계 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

\_\_\_\_\_

----- 계산방

법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 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 2.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 략)
  -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 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u>5년</u>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u>2025년 12월 31일</u>
<u>.</u>
· 1.·2. (현행과 같음)
1. 2. (년 8년 E E F F E E F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의소의22(중단소의세의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u>3년</u>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④ ~ ⑥ (생 략)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저 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 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 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 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 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한 과세특례) ①
<u>2027년 12월 31</u>
일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 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 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 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 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 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 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 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 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 ④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u>2025</u>
년 12월 31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
례) ①
"/

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 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 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 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 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 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 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다.

1. • 2. (생략)

<u>2027년 12월</u>
31일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 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 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 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 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 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 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2) ~ (4) (연행과 살음)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u>2027년 12</u>
월 31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
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
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 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 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 용한다.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u>것</u>
-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u>것</u>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 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 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 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 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 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 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 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 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 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1
가
<u>্</u>
구감소지역 및

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 1) (생략)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나. (생 략)

- 2. (생략)
- ② ~ ⑧ (생 략)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 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 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

1) (현행과 같음)
2)
인구감소지역
<u>.</u>
3)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
납액 징수특례) ①

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 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 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 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 속하고 있을 것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u>2026</u> <u>년 12월 31일</u>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할 것
- 3. ~ 6. (생략)
- ②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7} 2027
기· <u>2021</u> 년 12월 31일
<u> </u>
나 <u>2027</u>
<u>년 12월 31일</u>
2 <i>C</i> (처체되 가야)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 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 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 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한다.
- ④・⑤ (생략)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 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 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 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 징수를 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신 설>

⑦ ~ ⑩ (생 략)

③
<u>2028년 12월 31</u>
일
④·⑤ (현행과 같음)
<b>6</b>
1. ~ 5. (현행과 같음)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
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 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 초연금 수급자일 것
-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 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삭 제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

의 망식으도 인술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u>야 한다.</u>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2

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 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 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 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 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 3. 삭 제
- 4.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삭 제
-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 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 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생략)
-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생 략)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5)	 	 	 	 _
	 	 	 	 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 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 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 구

- 1) (생략)
-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
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
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
<u>개호 토기인 첫으로 인</u> <u>다</u> .
<u> </u>

- 3) (생략)
- 3. (생략)
- ⑥·⑦ (생 략)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 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 액 등 - 1천700만 원)× 2천1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100분의 35로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 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 3)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_\_\_\_\_
- -----.
- 1. · 2. (현행과 같음)
- 3.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 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원) × 2천7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 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 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 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 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 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 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 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 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 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 ⑤ (생 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생 략)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 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 에 해당하는 금액

$$\frac{A}{B} \times C$$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 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 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 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 월수 + 6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 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하반기</u>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⑥ ~ 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 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 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 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 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

<u>♥</u> )
5
·.
1. (현행과 같음)
2. <u>상반기</u>
⑥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
도) ①
<u>경우</u>
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
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

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생략)

제10절의5 <u>투자·상생협력</u>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u>양도소득세</u>	 	 	 

② (현행과 같음)

----- <u>투자·상생협력 및</u> <u>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u>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한 대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u>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u> <u>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u> 자회사
- <u>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u>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 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할 것
  - <u>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u> 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보다 증가하 였을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 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 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 균금액 × 1.05)

2. 주주환원비율: 내국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신 설>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0조의33제1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이 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 자가 해당 주주환원 확대기업으 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 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등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 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 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 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 액
  - <u>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u>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 <u>한 세액</u>
  - <u>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u> <u>큰 금액</u>
    - 1)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u>더한 금액</u>
      - <u>가) 이자소득등(과세특례</u>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금액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u>더한 금액</u>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
    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1) 「소득세법」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소득: 같은 법 제 129조제1항제1호나 목의 세율

- (2) 「소득세법」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
  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
  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같은 법 제17조제1
  항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 액
  - <u>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u> 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 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 과세특례 배당소득 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
       도로 한다)에 100분의 9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 세특례 배당소득을 제외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u>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u> <u>한 세액</u>

<u>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 더</u> <u>한 금액</u>

-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100분
     의 9
  - 나) 「소득세법」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되 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등 중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조제1항 제1호나목의 세율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매년 최초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 음 날까지 해당 기업의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 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

배당소늑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
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주주환원금액 명세서와 과세
특례 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 확대기
업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
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u>「소득세법」 제94조</u>

하다.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 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샹도소
득세 과세표준		
<u>&lt;삭 제&gt;</u>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 (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 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 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 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 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 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 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
즈 <u></u>
공제한
<u>다</u> .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급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 ⑤ • ⑥ (생 략)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해운법」상 외항운상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 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 업의 <u>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u> 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u>금액)은 2백만원</u>
5백만
원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
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00001 1000 016
2029년 12월 31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8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
<u></u>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⑨ (생략)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 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 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2조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 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 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u>2027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 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 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 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 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 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
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정
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
의 100을 직접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경
바에따라공동으로출자한경우를포함한다)하고있는외국
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외국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 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

1. ∼ 3. (연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u>2027</u>
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

<u>202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금액에
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
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
<u>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u>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u>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u>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초과배당금액</u>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 <u>설></u>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u>초과배당금액</u>을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 <u>이월된 금액</u>--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 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 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

\_\_\_\_\_

-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 저 공제할 것
-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⑤ (생략) <신 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1. 이월공제배당금액-----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 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 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 계관리법 | 제24조에 따른 건설 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 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 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 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 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 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 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다음 5개 과세기 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 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 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 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 ② (생략)
- ③ 4) 삭 제
-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 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 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 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 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 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 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 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②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⑥ (생 략)
- 7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부터 추징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⑧ (생 략) <신 설>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	~ ⑥ (현행	과 같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

평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
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
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 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 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 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이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 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 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

<u>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u> 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 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 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 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 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 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 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 본법 | 제51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 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 다.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 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 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 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 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u>「관</u> 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 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 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 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 다.

-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 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 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관
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특례적용
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
③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례적용관광호텔</u>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u>특례적용관광호</u> <u>텔</u>,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등 | 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 |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 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 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 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 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 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
<u>설</u>
<b>4</b>
특례적용관광숙
<u>박시설</u>
제108조의3 <u>(금사업자 등의 부가가</u>
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
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
<u>사업자</u>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
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
래계좌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 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 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u>금거래계</u> <u>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u>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 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 우에는 "0"으로 본다.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100만원</u>
  -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 동차에만 적용한다.
  - ④·⑤ (생 략)
  -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u>금거래계</u>
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
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현행
과 같음)
②
,
1 <u>70만원</u>
2 <u>70만원</u>
<u>70</u> 만원
③
2026년 12월 31일
④·⑤ (현행과 같음)
<u>⑥</u>
2026년 12월 31일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 동차에만 적용한다.

- ⑦·⑧ (생 략)
-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 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

<u>.</u>
⑦·⑧ (현행과 같음)
9
2026년 12월 31일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4 0 (5) 5) -) -) 0)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 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2. (생략)

④ ~ ⑦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u>양도소득세</u>
<u>.</u>
1
<u>양도소득세</u>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d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u></u> ]부개정법률
∥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
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 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 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 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 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 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 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다.

1. • 2. (생략)

양도소득세
1. • 2.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 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 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 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 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 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④ ~ ⑥ (생 략)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 제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

② (현행과 같음)
③
<u>양도소득세</u>
<u>「소득세법」</u>
제111조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
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

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 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 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 (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 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로 한정한다)은「소득세법」 제 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 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 1. 2. (생략)
- ② ~ ⑤ (생 략)
- 료비 등 공제) ①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례) ①
같은 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 료비 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 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 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 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

-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

   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

   의 20 이상인 경우
-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⑥ ⑦ (생 략)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 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 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 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

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 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 호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보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나. (생 략)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3
o 문화체육사
용분
п =1 -1) (
사용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
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
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
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u>	
4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
	분 및 <u>도서등사용분</u>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
	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u>도서등사용분</u> 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u>나.</u>
4	
4. –	
	<u>문화체육사용분</u>
5. –	
0.	
	문화체육사용분
	<u>- , , , ,                           </u>
6. –	
<b>.</b>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u> 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직불카드등사 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
<u>체육사용분</u>
다
1)
문화체육사용분

금액 - 신용카드사용	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
<u>서등사용분</u> ) × 100분의	의 40

2) (생략)

라. 삭 제

- 7. (생략)
- 8. 삭 제
- ③ ④ (생 략)
-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⑥ ~ ⑩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③ (생 략)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

<u>문</u> <u>화체육사용분</u> 2)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 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 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 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 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 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 ① (생 략) <신 설>

<u>제6조</u>
<u>제29</u>
조의8
⑤ ~ ① (현행과 같음)
① 제29조의8제9항은 제29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
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	제) ①
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	
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	
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	
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	
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	
다), <u>제99조의12</u> , 제104조의14,	<u>제99조의12, 제100조의33</u> -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	
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	
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	
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	
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②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 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2 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 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 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 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 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 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 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

<u>제99조의12, 제100</u>
<u>조의33</u>
③ (현행과 같음)
4

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 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 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 11제1항, <u>제99조의12</u>,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 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 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 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 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 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 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 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레OO > 시10 -레1OO >
<u>제99조의12, 제100조</u>
<u> 의33</u>
1. ~ 3.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의 제한) ①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 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 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 ②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저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국내투
<u> 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u>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
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
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 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 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 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 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 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 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 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삭 제
-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0,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0 (원웨기 기상)
2. (현행과 같음)
3
제99조의
<u>제35모ㅋ</u> 12, 제100조의33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 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 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 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 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주
<u>제99조</u> 의12 제100조의33
<u>제99조</u> 의12, 제100조의33
<del></del>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 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u>제</u>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

②
제99조
의12, 제100조의33

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③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u>자소</u>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u>징)</u>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 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 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 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 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u>제91</u>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u>(이자·배당소득 비과</u>
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 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 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 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 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 라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u> 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u>
<u>이자소득</u>
또는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
五之
같은 법 제122
<u> </u>
② ~ ⑤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의 결과

O 수입 : △187,160.34억원

(단위: 억원)

	Т		T				(단	위: 억원)
구 :	연 도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유		
지출								
	소 계(A)							
	○창업중소기업 세 액감면 제도 합 리화(§6)	-	△8,063	△7,523	△7,523	1,430	△21,680	△5,420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 장(§10)	-	△9,409	△9,409	△9,409	△130	△28,358	△7,089.6
	○연구개발 출연금 에 대한 과세특 례 인정범위 확 대(§10의2)		ネ	정	곤	란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합리화(§12의 4)		ネナ	정	권	란		
수입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 과세 특례 연장 (§16의2)	-	△344	△344	△344	-	△1,032	△344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연장(§16의 3)	1	△7	△7	△7	1	△21	△7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6의4)	-	△0	△0	△0	-	△0	△0
	○성과공유 중소기 업 세액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	-	△141	△141	△141	17	△407	△101.8

최. 허지(\$10)							
한 연장(§19)							
o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_	△57	△57	△57	-	△171	△57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							
○투자세액공제 점							
감구조 도입, 증가							
분 공제율 상향		△29,322	△29,322	△29,322	△2,615	△90,580	$\triangle$ 22,645
및 적용기한 연장							
(§24)							
○임대목적의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추	정	곤	란		
대상에서 제외(§24)							
○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요건 완화				^ <b>2</b> 0	^ <b>2</b> 0	A 60	^ <b>2</b> 0
및 소득세 감면 연장	-	-	-	△30	△30	△60	△30
(§29의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경력							
단절자 채용시 지		. 4.040	. 40 445			. 46 EEO	4 44 600
원요건 완화 및	-	△4,019	$\triangle 19,445$	△11,644	△11,644	△46,752	△11,688
적용기한 연장(§29							
<u>⊅ 8)</u>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추	정	곤	란		
확대(§30)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triangle 3.11$	△3.11	△3.11	-	△9.33	$\triangle 3.11$
기한 연장(§46의7)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에 대한		추	정	곤	란		
과세특례 신설(§47)		'		_	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_	△23	△23	△23	△23	△92	△23
한도 확대(§58)					-20	_,	-2
○수도권 내로 공장							
이전 중소기업 감							
면대상 제외 및							
지방이전지원세제	-	290	290	290	290	1,160	290
감면요건 합리화							
(§63)							
○ (\$ <sup>(</sup> \$00)							
· 가영의전자전세세 감면요건 합리화		추	정	곤	란		
- 유인호선 합니와 - (§63의2)		<b>一</b>	78	딘	딘		
(- ' )							
○인구감소지역 주		추	정	곤	란		
 택 취득자에 대한		'		_	_		

양도소득세 및 종 합부동산세 과세 특례(871의2)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급산입 특례 허용(874)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86의 - △172 △172 △172 △172 △688 △172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작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상가임대료 인하
특례(\$71의2)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급산입 특례 허용(\$74) ○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86의 - △172 △172 △172 △172 △688 △172 3)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급 손급산입 특례 허용(§74)       추       정       고       란         ● 노란우산공제 세계 지원 강화(§86의 3)       - △172 △172 △172 △172 △172 △6688 △172 △172 △172 △688 △172 △172 △172 △172 △172 △6688 △172 △172 △172 △172 △172 △172 △172 △172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74)       추       정       고       란         ● 노란우산공제 세계 지원 강화(\$86의 3)       - △172 △172 △172 △172 △172 △688 △172 3)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황기       추       정       고       란         적용대상 확대(\$87)       →       조       만       관         이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 300 △600 △900 △1,200 △1,909 △4,909 △981.8       ★ 981.8         (\$91의18 · \$129의2)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15.79 ← - → △15.79 △15.79       → → △15.79 ← - → △15.79 △15.79         연장(\$91의20)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정요건 완화 (\$91의22)       → 청 교 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74)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86의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중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준비급 손급산법 특례 허용(\$74) ○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86의 - △172 △172 △172 △688 △172 ③)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 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정요건 완화 (\$91의22)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 노란우산공제 세계       지원 강화(§86의       -       △172       △172       △172       △688       △172         3)       ○ 주택청약중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추       정       곤       란       란       관련         ○ 개인중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129의2)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       -       -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       ○15.79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       ○15.79       ○       ○       ○       ○15.79       ○       ○       ○       ○       ○       ○       ○       ○       ○       ○       ○       ○       ○       ○       ○       ○       ○
○ 노란우산공제 세계       지원 강화(§86의       -       △172       △172       △172       △688       △172         3)       ○ 주택청약중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추       정       곤       란       란       관련         ○ 개인중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129의2)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       -       -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15.79       ○       ○       ○15.79       ○       ○15.79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15.79       ○       ○       ○       ○15.79       ○       ○       ○       ○15.79       ○       ○       ○       ○       ○       ○       ○       ○       ○       ○       ○       ○       ○       ○       ○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추       정       곤       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300       △600       △900       △1,200       △1,909       △4,909       △981.8         ● 청년형 연장(§91의20)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       -       -       △15.79       -       -       -       △15.79       △15.79       -       -       -       △15.79       △15.79       -       -       -       △15.79       △15.79       -       -       -       △15.79       △15.79       -       -       -       △15.79       △15.79       -       -       -       △15.79       △15.79       △15.79       -       -       -       △15.79
소득공제 및 비과세 추 정 곤 란
적용대상 확대(\$87)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300 △600 △900 △1,200 △1,909 △4,909 △981.8 (\$91의18 · \$129의2)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세제지원 확대 (§91의18 · §129의2)       △300       △600       △900       △1,200       △1,909       △4,909       △981.8         ● 청년형 연장(§91의20)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       -       -       -       △15.79       -       -       -       △15.79       △15.79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91의22)       추       정       고       라       라       セ       ム1,285       △1,285       △1,285       ム1,285       ム1,285 <t< td=""></t<>
제좌 세제지원 확대 △300 △600 △900 △1,200 △1,909 △4,909 △981.8 (§91의18 · §129의2)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제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1,285 - △3,855 △1,285
(§91의18 · §129의2)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1,285 △3,855 △1,285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창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 완화 추 정 곤 란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1,285 △3,855 △1,285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연장(§91의20)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       정       고       란         (§91의22)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       정       고       란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       정       고       란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1,285       △1,285       -       -       △3,855       △1,285         (§92)       △1,285       △1,285       -       -       △3,855       △1,285
추징요건 완화 추 정 곤 란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 정 곤 란 관
(§91의2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 정 곤 란 적용기한 연장 (§91의23)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 - △3,855 △1,285
○개인투자용 국채       수       정       고       란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       정       고       란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1,285       △1,285       -       -       △3,855       △1,285         (§92)       △1,285       △1,285       -       -       △3,855       △1,285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3,855 △1,285
적용기한 연장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3,855 △1,285
(§91의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3,855 △1,285
○ 결혼세액공제 신설 (§92) △1,285 △1,285 △3,855 △1,285
이경/[참대표 한야
어딘 아이를 계시되었다.
임대시업자 세액공제 - △545 △545 △545
적용기한 연장
(§96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추 정 곤 란
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3)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2.34 △2.34 △7.02 △2.34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9)
o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 추 정 곤 란
지는 한 8구의한 8 무기 가장 한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98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		_			
적용기한 연장		추	정	곤	란		
(§99의10)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	정	곤	란		
과세특례 신설(§99							
의14)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	△600	△600	△600	△600	△600	△3,000	△600
금액 인상(§100의	△000	△000	△000	△000	△000	△3,000	△000
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		.=	<b>→1</b>	_	<b>→1</b>		
특례신설(§100의		추	정	곤	란		
33)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추	정	곤	란		
과세특례(§100의34)		'	0	L	Ľ		
○ 전자신고 세액공							
	1,245	1,567	1,567	1,567	1,567	7,513	1502.6
제 축소(§104의8)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추	정	곤	란		
특례 재설계(§104의		,			J		
10)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140	△140	△140		△420	△140
특례 적용기한	-	△140	△140	△1 <del>4</del> 0	-	△ <del>4</del> ∠0	△140
연장(§104의11)							
○해외자원개발투자							
에 대한 과세특례		추	정	곤	란		
(§104조의1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							
면 적용기한 연장	-	△61.5	△61.5	△61.5	-	△184.5	△61.5
(§104° 24)							
○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							
	-	△0.8	△0.8	△0.8	-	△2.4	△0.8
산입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4의							
26)							
○ 건설기계 처분이익		추	27	77	란		
시업소득 분할 과세		子	정	곤	단		

	트레 지성(\$104히							
	특례 신설(§104의							
	34)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추	정	곤	란		
	기산세 보완(§106의7		·					
	7)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5	434	434	434	434	1,844.5	368.9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200.0	101	101	101	101	1,011.0	
	(§106의11, §108의3)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triangle 10.5$	△5.3	-	-	-	△15.8	△7.9
	대상 확대(§107의2)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조정	663	883	883	883	883	4,195	839
	(§10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14	△14	△14			△42	△14
	관세감면 적용기한	△14	△1 <del>4</del>	△1 <del>4</del>	_	_	<u> </u>	△1 <del>4</del>
	연장(§118의2)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		A 124				A 124	↑ 124
	카드 소득공제 적용	-	△134	_	_	_	△134	△134
	(§126의2)							
	○ 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	-	277	277	277	277	1,108	277
	중복배제(§127)							
	소 계(B)	△195.34	△51,51284	△65,998.75	△57,226.41	△12,225	△187,160.34	△48,091.14
 총 비	용(A-B)	195.34	51,512.84	65,998.75	57,226.41	12,225	187,160.34	48,091.14
	, ,		1				-	

#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제6조 (참어즈시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대한 감면율 조정 및 연간 감면한도(5억원)를 설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4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	제10조 (연구·인력개 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에 존재하던 점감구조 공제율을 상향하고,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까지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4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	제10조의2	출연금이 지출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범위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4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5	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15%→10%)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4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성과공유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	제19조제2항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 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0	제24조 (통합투자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공제율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임대목적의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4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11	제29조의6제1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삼인력 성 과 보 상 기 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 발생

		고용 증가시 총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3년간 분할 지원에서 2년간	
	제29조의8	집중 지원으로 개편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12	(통합고용세액	'25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공제)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30조제1항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3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단절	
	소체감면대상확대	근로자'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감 발생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14	위한 비상장	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주식교환등에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대한 과세특례)		
	제47조 (벤처기업		
15	(변시기 ii   복수의결권주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취득에 대한	세수가 감소하게 됨	
	과세특례)		
	제58조제1항		
16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	
	기부금에 대한	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감 발생	
	세액공제 등)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수도권 내(인구감소지역 제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감면	
17	이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기업의 업종요건 등 감면요건을 합리화	
	기업에 대한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본사이전 기업의 업종요건 등 감면요건을 합리화함에 따라	
18	이전하는	존사이전 기업의 법등표신 등 심원표신들 법니와함에 따다     세수가 증가하게 됨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40	주택 취득자에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	
19	대한 양도소득세 및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중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4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20	(고유목적사업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함에 세수가 간소하게 된	
20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1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 ·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일부 확대 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3) 19.3,820	이고, 답긴 대효사에 대안 오득통세 식용 대상 기군들 종급역액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에 따른 세수감 발생
22	제87조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3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4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5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로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6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7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인당 50만원씩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
28	제96조의3제1항 (상기라다를 안하한 임대시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 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9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0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1	제98조의9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과세특례)	
32	제99조의10 (영세개인시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33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 후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됨 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34	제100조의3제1항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수감 발생
35	제100조의3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 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36	제100조의34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37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의 대리신고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38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9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 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0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증가하여 세수가 감소하게 됨

41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4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2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3	제104조의34 (건설기계 처분이익 시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건설기계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세수감 발생
44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사유로 인한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미적용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45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면세점 등의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로 인한 거 래질서 정상화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가 감소하여 세수가 증가 하게 됨
46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 시설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추가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47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어, 세수가 증가하게 됨
48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9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동일한 공제율(30%)을 적용함에 따른 세수감 발생
50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제6조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	
	제10조		
2	(연구·인력개발비에	0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으로 특
3	출연금 등의	×	파세득데 내경 됩내에 따는 구가석으로 득     례신청이 가능한 출연금 규모 등 추정곤란
	과세특례)		
	제12조의4		즈시코드 키키, 스코 이렇세 메키 초키워스크
4	(기술혁신형	×	주식취득 기간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를 사전에
_	주식취득에 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세액공제) 제16조의2		101/10
5	세10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0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0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제16조의4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0	
/	행사이익에 대한	O	
	과세특례)		
	제19조		
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0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제1항		
	세19소세1양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9	경영성과급에 대한	0	
	세액공제 등)		
10	제24조	0	
10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6제1항		
1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0	
	수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0	제29조의8		
12	(통합고용세액공제)	0	
13	제30조	×	소득세 감면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
	(중소기업 취업자		스크에 합신에 6월 76위단필적 6위시 76위

	소득세 감면)		단절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른 수혜자 규모를
14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0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15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규모 및 과세이연 신청 건수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 곤란
16	제58조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0	
17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0	
18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감면요건 합리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및 해당기업의 감면소득 등 추정곤란
19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특례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 곤란
20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특례)	×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의료기술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 으로 추정하기 곤란
21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0	
22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x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추가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될 기존 가입자 수, 추가 가입자 수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 곤란
23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0	
24	제91조의20 (청년형	0	

	スレフストラフラフラスル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5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x	추징요건 완화 이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건수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 곤란
26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x	'24.6월부터 개인투자용국채가 발행되어 매입 수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 곤란
27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0	
28	제96조의3제1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	
29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장기보유로 인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로 재계산하기 어려워 추정 곤란
30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O	
31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특례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 곤란
32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징수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함에 따라 추가 면제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
33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특례 적용 대상 및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 곤란
34	제100조의3제1항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0	
35	제100조의3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	상장법인 이익 규모 및 그에 따른 배당 등 주주환원금액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 하기 곤란

	제100조의34		
36	세100조의34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x	배당 확대 규모 및 증가율, 개인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37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0	
38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특례 미적용 시 과세표준 금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추계하기 곤란
39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0	
40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해외자원개발 외국자회사의 수, 투자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41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0	
42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0	
43	제104조의34 (건설기계 처분이익 시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신규 건설기계 대체 취득을 위한 기존 건설 기계 처분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곤란
44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사유를 사 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45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0	
46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0	
47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0	
48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0	

	관세감면)		
	제126조의2제2항		
4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0	
	대한 소득공제)		
FO	제127조	0	
50	(중복지원의 배제)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 '24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10, \$12의4, \$16의2, \$16의3, \$16의4, \$19, \$24, \$29 의6, \$30, \$46의7, \$91의20, \$91의23, \$96의3, \$97의3, \$97의9, \$99의10, \$104의10, \$104의11, \$104의24, \$104의26, \$109, \$118의2의 규정은 '24년 말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향후 세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고 '25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29의8의 규정은 '25년 말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향후 세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나,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세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은 세수를 추계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6)
- 세수감: (a) + (b) = △21,680억원
  - (a: 제도 합리화) '22년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 적용기한 종료, 기업의 연간 감면한도 초과액, 수도권 창업기업의 감면액 비중 등 고려 추계 = +5,180억원
  - (b: 적용기한 연장) △8,953.4 × 3년(일몰 연장기간) = △26,860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②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적용기한 연장(§10)
- ㅇ 세수감 : (a) + (b) = △28,358억원
  - (a: 점감구조 도입) △130억원\* × 4년 = △ 520억원
    - \* 국세청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R&D 실적을 고려하여 추계
  - (b: 적용기한 연장) △9,279.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27,838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③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10의2)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례 신청이 가능한 출연금 등의 규모, 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의 소득금액 발생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
- ④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12의4)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주식취득 기간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ㅇ 세수감 : △1,032억원
  - △34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032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16의3)
- o 세수감 : △21억원
  - △7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21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⑦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6의4)
- 이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⑧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19)
- 세수감: (a) + (b) = △407억원
  - (a: 공제율 인하) '22년 법인 실적의 공제율 하향 효과를 고려하여 추계
  - (b: 일몰연장) △158.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75.1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19②)
- o 세수감 : △171억원

- △57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71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및 임대목 적의 투자 제외(§24)
- 세수감: (a) + (b) + (c) + (d) = △90,580억원
  - (a: 점감구조 도입) △12\* × 4년 = △48억원
    - \* 국세청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투자 실적을 고려하여 추계
  - (b: 적용기한 연장) △26,706.6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80,119.8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c: 증가분 공제율 상향) △2,603억원\* × 4년 = △10,412억원
    - \* '24년 투자 예상규모를 바탕으로 공제율 차이를 적용하여 추계
  - (d: 임대목적 제외) 추정곤란
  - \*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자산 투자 규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규모,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외의 투자규모 등을 사전에 추정하기 곤란
-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9의6)
- o 세수감 : △**60**억원
  - △30억원 × 2년 = △60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29의8)
- 세수감 : (a) + (b) + (c) = △46,752억원
  - (a: 제도 합리화) '22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단축에 따라 25, 2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추계 = △12,363억원
  - (b: 경력단절자 요건완화) 통계청 설문조사의 퇴직 사유 등 고려하여 추계 = △96억원
  - (c: 적용기한 연장) △11,431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4,293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단절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른 수혜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 ④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7)
- ㅇ 세수감 : △9.33억원
  - △3.11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9.33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47)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규모 및 과세이연 신청건수 등 추정곤란
- (§58) 교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58)
- o 세수감 : △**92**억원
  - △23억원\* × 4년 = △92억원
    - \* '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등을 토대로 추정
- ① 수도권 내로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및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요건 합리화(§63)
- ㅇ 세수증: 1,160억원
  - '22년도 수도권 내 공장이전 중소기업의 감면 실적을 고려하여 추계
- ® 수도권밖 본사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합리화(§63의2)
- ㅇ 세수증: 추정곤란
  - 본사이전 기업의 업종요건 등 감면요건 합리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수, 본사이전 기업의 소득금액 등을 추정하기 곤란
- 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71의2)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특례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기 등을 추정하기 곤란
-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74)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의료기술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86의3)
- o 세수감 : △688억원
  - △172억원\* × 4년 = △688억원
    - \* 노란우산 소득공제 인원 및 가입자 비율 등을 토대로 추정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87)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추가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될 기존 가입자 수, 추가 가입자 수 등 추정 곤란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91의18, §129의2)
- 세수감: △4,909억원
  -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4,909**억원\*
    - \* 일반형·서민형 가입비율, 납입금액, 연 수익률, 계약기간 등을 가정하여 추정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추정곤란\*
    - \* 신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 등 추정곤란
-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91의20)
- ㅇ 세수감 : △15.79억원
  - △15.79억원\* × 1년(일몰 연장기간) = △15.79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91의22)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추징요건 완화 이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건수 등 추정 곤란
- ②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23)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4.6월부터 개인투자용국채가 발행되어 매입수요 등 추정 곤란

- ②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92)
- 세수감 : △3,855억원
  - △1,285억원 × 3년(일몰기간) = △3,855억원
    - \* 부부 1인당 공제 한도 및 '22년 혼인 건수 등을 토대로 추정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96의3)
- ㅇ 세수감 : △545억원
  - △545억원\* × 1년(일몰 연장기간) = △545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7의3)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장기보유로 인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재계산하기 어려워 추징 곤란
-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 장(§97의9)
- ㅇ 세수감 : △7.02억원
  - △2.3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7.02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98의9)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특례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기 등을 추정하기 곤란
- ②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99의10)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징수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지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함에 따라 추가 면제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
- ③ 연금계좌 납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99의14)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특례 적용 대상 및 양도시기 등을 추정하기 곤란

#### ③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100의3)

- ㅇ 세수감 : △3,000억원
  - △600억원 × 5년 = △3,000억원
    -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으로 5만 가구 신규 수급에 따른 세수감 추정

#### ③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신설(§100의33)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상장법인 이익 규모 및 그에 따른 배당 등 주주환원금액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③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00의34)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배당 확대 규모 및 증가율, 개인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 등 추정 곤란
- ③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104의8)
- o 세수증: 7,513억원 (국세분: 6,994억원, 지방소비세분 519억원)
  - '22년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실적 중 직접신고분 및 세무사, 세무법인 신고분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추계

#### ③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재설계(§104의10)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법인의 특례 미적용 시 과세표준 금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추계하기 곤란

## ③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1)

- o 세수감 : △420억원
  - △14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20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104의15)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해외자원개발 외국자회사 의 수, 투자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04의24)

o 세수감 : △184.5억원

- △61.5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84.5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②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1 04의26)
- o 세수감 : △2.4억원
  - △0.8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2.4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④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04의34)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대체 취득을 위한 기존 건설기계 처분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 곤란
-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106의7⑦)
-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사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106의11, §108의3)
- 세수증: 1,844.5억원 (지방소비세분 포함)
  - 434억원\* × 4.25년\*\* = 1,844.5억원
  - \* 면세점 매출 규모, 송객수수료 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으로 인한 송객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 감소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 추정
  - \*\*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로, '29년까지 세수효과 추정
- 46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107의2)
- ㅇ 세수감 : △15.8억원 (지방소비세분 포함)
  - △21억원\* × 0.75년(일몰기간) = △15.8억원
    - \* 과거 조세지출 규모, 관광호텔업 대비 휴양콘도미니엄업 매출 비율 등을 고려 하여 연간 세수효과 추정
-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109)
- ㅇ 세수증: 4,195억원
  - '23년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실적의 30%만큼 세수증 효과 발생 (개별소비세) 632억원 = (2,108억원 × 30%)

(교육세) 190억원 = (632억원 × 30%)

(부가가치세) 61억원\* = ((632+190)억원 × 10% × 74.7%)

- \* 지방소비세까지 포함시 82억원
- 단, '25년 4분기 판매분은 '26년에 납부하므로 '25년 발생한 세수효과의 1/4은 '26년 귀속분에 해당하여, 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작성

#### 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18의2)

- o 세수감 : △42억원
  - △1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2억원
    - \* '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5년 예상 감면액(추정)

## 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26의2)

- o 세수감 : △134억원
  - △134억원 × 1년('25.7월분부터 공제적용) = △134억원
    - \* '22년 수영장·체력단련장 매출액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비율 등을 토대로 추정

#### ② 창업중소기업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127)

- ㅇ 세수증: 1,108억원
  - 감면액에서 중복률\*을 곱하여 계산
    - \* 전체 소득세 법인세 신고 기업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개인, 법인과 고용증대를 받은 개인,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

####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민다연	김만기	김문건	박금철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민다연	044-215-4136	gfxm140@korea.kr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0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	-----	-------	-----	-----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 ○○기금			_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Ò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 IV. 부대의견

O 해당없음

##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VI.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민다연	김만기	김문건	박금철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민다연	044-215-4136	gfxm140@korea.kr